

(주)제주항공 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2015. 5. 제정

2020. 8. 4 일부 개정

2023. 5. 9 일부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주항공의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-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심의, 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관리, 감독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

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5조(해임)

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
제6조(의장)

- ①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그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은 경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,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7조(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)

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의 소집)

- ① 경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. 단, 의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는다.
- ② 임시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권자)

- ①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2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의 방법)

- ①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11조(통보 의무)

경영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부의 사항)

- ①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며, 제2호에서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직전 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로 한다.

1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사업계획, 사업구조 조정추진
- (3)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(4)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(5)노조정책에 관한 주요사항
- (6)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(7)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8)지점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, 폐지
- (9)항공기 도입 의사결정을 제외한 항공기 계약관련 의사결정
- (10)5억원 이상의 비반복성 신규 투자
- (11)정기 노선의 개폐
- (12)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(1)자기자본 10% 미만인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자산총액 5% 미만인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(3)자기자본10% 미만인 차입에 관한 사항
{차입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기존 차입금의 연장이나 대환(동일 금융기관 내 차입과
목 변경 또는 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상환을 포함함)은 제외함}
- (4)자기자본5% 미만인 채무인수, 채무면제
- (5)자기자본5% 미만인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대여
- (6)투신사 자사주 펀드 가입 및 중도해지
- (7)청구금액이 자기자본 5% 이상인 소의 제기
- (8)환율, 유가 헤지(Hedge) 상품 계약 체결 등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
- (9)대손처리에 관한 사항

3. 기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13조(위임)

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,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경영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의사록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5조(간사)

- ①경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경영위원회 지원부서장이 간사가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6조(규정의 개정 및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<2016. 5. 3.>

이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8. 4.>

이 규정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5. 9.>

이 규정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